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0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자동차관리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김현미<br>(국토교통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0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7235호, 2020. 4. 7, 일부개정)됨에 따라,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(안 제19조제3항제2호의2 신설)
- 나.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업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(안 제19조제3항제2호의3 신설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 
위한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

2의3.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  
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업무에 관한 업무

## 부 칙

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(권한의 위탁) ①·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9조(권한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 | ③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·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·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2의2.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·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</u>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2의3.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업무에 관한 업무</u> |
| 3.·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·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~ ⑩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~ ⑩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| (044) 201 - 3840 |